

꼭! 알아 두어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

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요 지원제도를 매월 게재하여
경영지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
바랍니다.



기술개발 지원

◎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

미래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이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, 고부가가치 제품화
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.

❖ 지원규모 : 2,091억원(신규과제 1,071억원, 계속과제 1,020억원)

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4,424개사 중 1,036개사 선정지원, 계속 390사(과제당 1.9억원)

❖ 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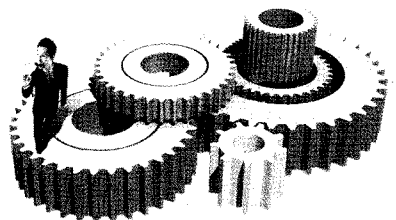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
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※ 제외업종 :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오락업 및 문화업,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

❖ 신청접수

-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※ 사업계획서 신청 :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
로그인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
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

❖ 지원내용

구분	내용
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(10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출연금(총사업비의 60% 이내), 개발기간 2년 이내, 최대 8억원까지 지원 · 수출경쟁력을 지닌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유망품목 기술개발과제 지원(자유응모)
투자연계과제 (12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출연금(총사업비의 60% 이내), 개발기간 2년 이내, 최대 8억원까지 지원 ·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'민간 투자연계 방식' 을 통해 지원(지정공모)
미래선도과제 (851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출연금(총사업비의 75% 이내), 개발기간 2년 이내, 최대 5억까지 지원 · 저탄소 녹색성장, 첨단융합 등 핵심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을 '지정공모 방식' 으로 지원

☞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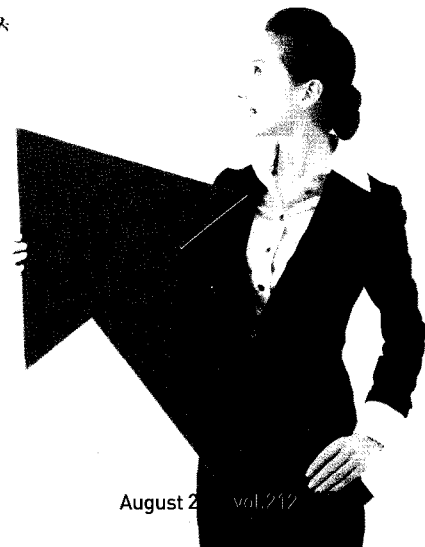
- 수출경쟁력 우수업체 지원을 위한 전용 R&D과제 신설(→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)
- '11년도부터 지정공모과제 중심의 전략분야 R&D지원으로 특화
- ※ 기존 '창업실용과제' 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 →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'11년 신규, 950억원)

❖ 제출서류 : 현장평가시 다음 서류 준비

-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(해당기업)
-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)
-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(우대사항 근거 포함)
- ※ 관련서식 :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

❖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: 042-481-4446, 4451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: 042-715-2320 / 2329-2333
- 전용사이트 : www.smtech.go.kr(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)
- 전화상담은 1661-1357(R&D 고객센터)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



◎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

잠재력은 보유하고 있으나,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
※ 지원규모

- 950억원(창업과제 500억원, 성장과제 450억원)
- 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과제 수 3,861개사 중 570개 선정지원, 과제당 1.48억원

※ 지원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,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- ※ 제외업종 :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오락업 및 문화업,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
- 창업과제 : 창업 5년 이하인 창업초기기업
- 성장과제 : 창업 5년 초과인 중소기업(소기업 가점 부여)

※ 지원내용

분야	내용	지원한도
창 업 과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2억까지 지원 · 창업 5년 이하의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실용화 기술을 '자유응모 방식'으로 지원 	총사업비의 75%까지 지원
성 장 과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2억까지 지원 · 창업 5년을 초과한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실용화 기술을 '자유응모 방식'으로 지원 	총사업비의 75%까지 지원

※ 신청·접수

-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신청기간 : 상하반기로 진행

※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: 042-481-4459, 4442

인력지원

◎ 인력채용 패키지사업

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통해 양성한 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❖ 지원규모

- 미취업자 3,000명(전체 예산 30.3억원)
- ※ '10년 지원현황 : 미취업자 3,000명 지원

❖ 지원대상

-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단체 등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발한 미취업자
- 계좌제 하에서의 본인부담금 40~80만원

❖ 지원내용

- 집합교육수당(2~3개월) : 1인당 월 11만6천원(노동부 지급)
- 기업현장연수수당(1~3개월) : 1인당 월 70만원(중기청 지급)

❖ 신청·접수

- 인력채용패키지 홈페이지(job.kbz.or.kr)에 접속하여 교육과정 검색후 해당과정의 모집기간 중 온라인 신청 또는 보조사업자(교육시관)에게 신청
- ※ 보조사업자 :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업종별 협동조합, 사업자단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연수생 선발 및 교육, 현장연수, 채용연계 알선 등 업무 수행

❖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: 042-481-3979
-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: 02-2124-3380

